#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025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 강선영·성일종·유용원

고동진 · 김상훈 · 김종양

서명옥 • 배준영 • 박준태

최수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관 런 기관에 진료기록 및 치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 는 상황임.

이에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70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0호 중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를 "제11조의2 및 제77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와"로,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생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3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	
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	
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	
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	
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	
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	
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u>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병역법」 <u>제11조의2에 따</u>	10 <u>제11조의2 및</u>
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	제77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
<u>검사와</u> 관련하여 질병 또는	장이 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	<u>검사와</u>
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	
의 장에게 <u>병역판정검사대상</u>	
<u>자의</u>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	<u>병</u> 역
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판정검사대상자, 확인신체검
	<u>사대상자의</u>

11. ~ 19. (생 략)	11. ~ 19.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